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622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소화물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화물자동차의 수소연료보조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3항 및 동 시행령 제9조의15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급단가, 지급한도량,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가보조금의 정의(안 제4조)

2021년 수소연료 가격보조 제도 도입에 따라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수소 연료

보조금”을 포함

나. 수소연료보조금의 지급한도량(안 제7조)

톤급구분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월 지급한도량(kg)	807	913	1,284

다. 수소연료보조금의 지급단가(안 제8조)

지급단가는 4,100원/kg으로 하며, 향후 화물자동차 연료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여 수소화물차 연료보조금 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라. 수소연료보조금의 신청방식(안 제14조)

수소연료보조금의 경우 카드협약사의 사정 등으로 유류구매카드가 출시되지 않아 발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발급 신청 및 교부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의 경우 서류로 신청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6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과
- 전화(☎) 044-201-3998, 4005/ 팩스 : 044-201-5601

4. 기타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